의 안 번 호	제198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육 미 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5월 31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

발의연월일 : 2019년 5월 31일
발 의 자 : 육미선,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최경천, 허창원

1. 제안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시행 2017. 5. 30.)되었음.

○ 충북('18.12.31. 기준)은 정신장애 추정환자수 160,068명, 알코올사용장애 추정환자수 47,079명, 기분장애 추정환자수 25,557명, 조현병스펙트럼장애 추정환자수 2,690명에 이르고 있으며, 등록 정신장애인 수도 소폭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12(3,520명) → '14(3,600명) →'15(3,719명) → '17(3,698명)

○ 이에,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북도 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 12개 시·도 제정
<미제정(5) :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충북**, 경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안 제9조)

라. 도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함 (안 제10조)

마.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3조)

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 내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및 비용 보조에 대한 규정 (안 제1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46호

다. 협　　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 복지 ·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 ·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 교육 · 주거 ·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 상담 · 치료 ·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 조사와 지도 ·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다.
④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모든 도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관할 시 · 군의 사업 등을 총괄 ·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2. 지역계획의 관할 시·군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4. 도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5. 도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6. 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 관련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7. 도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 · 분석 등 지원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민의 정신건강 위기상담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13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단체·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충청북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충청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 ·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 교육 · 주거 ·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 · 유아, 아동, 청소년, 중 ·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 ·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 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 시설 · 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 치료를 위한 교육 · 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 · 지원한다.

② 시 ·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 · 지원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 ·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 · 지원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 · 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시 · 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시행 2019. 10.24.>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문화 · 예술 · 여가 · 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 · 예술 · 여가 · 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사회 거주 · 치료 · 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 · 치료 · 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 ·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 ·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8조(단체 · 시설의 보호 · 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국가(도) 정신건강 정책에 따른 사업지원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9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되는 사업의 추계 및 물가 상승률을(2%)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국비 지원>

○ 9,240,563천원

<도비 지원>

○ 2,764,635천원

<도·시군비 지원>

○ 2,977,434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4,982,632	15,282,285	15,587,930	15,899,689	16,217,683	77,970,219
국 비		9,240,563	9,425,374	9,613,882	9,806,159	10,002,283	48,088,261
도 비		2,764,635	2,819,928	2,876,326	2,933,853	2,992,530	14,387,272
시군비		2,977,434	3,036,983	3,097,722	3,159,677	3,222,870	15,494,686
세 출		14,982,632	15,282,285	15,587,930	15,899,689	16,217,683	77,970,21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835,500	852,210	869,254	886,639	904,372	4,347,976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3,676,400	3,749,928	3,824,927	3,901,425	3,979,454	19,132,13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157,820	160,976	164,196	167,480	170,829	821,302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59,900	571,098	582,520	594,170	606,054	2,913,742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9,096,394	9,278,322	9,463,888	9,653,166	9,846,229	47,338,000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516,552	526,883	537,421	548,169	559,132	2,688,157
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		140,066	142,867	145,725	148,639	151,612	728,909
재원 조달		14,982,632	15,282,285	15,587,930	15,899,689	16,217,683	77,970,219
의존 재원	소 계	12,005,198	12,245,302	12,490,208	12,740,012	12,994,812	62,475,533
	보조금	12,005,198	12,245,302	12,490,208	12,740,012	12,994,812	62,475,53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2,977,434	3,036,983	3,097,722	3,159,677	3,222,870	15,494,686
기 타 (민간자부담)							